

[별표 16]

안전성확인·완성검사·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

(제28조제4항, 제29조제2항, 제30조제3항 및 제50조제7항 관련)

1. 안전성 확인

검사대상시설		검사항목
가.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	1) 용기 충전시설(소형용기 충전시설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시설을 포함한다)	별표 3 제1호가목4)라)①㉠부터 4)라)①㉠까지·5)·9)·10)다)③·10)다)④·10)라)
	2) 자동차용기 충전시설	위와 같음
	3)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	위와 같음
나.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		별표 5 제1호다목1)가)·1)다)·2)라)·2)바)·2)사)·6)·별표 3 제1호가목4)라)①㉠부터 4)라)①㉠까지·5)
다.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영업소 용기저장소		별표 6 제1호나목1)
라.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		별표 3 제1호가목4)라)①㉠부터 4)라)①㉠까지·5)·10)다)③·10)다)④·10)라)

2. 완성검사

검사대상시설		검사항목
가.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	1) 용기 충전시설(소형용기 충전시설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시설을 포함한다)	별표 3 제1호가목
	2) 자동차용기 충전시설	별표 3 제1호나목
	3)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	별표 3 제1호다목
나.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		별표 5 제1호
다.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영업소 용기저장소		별표 6 제1호, 별표 9(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)
라. 가스용품 제조시설		별표 7 제1호
마.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		별표 8 제1호
바.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(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하고, 사목의 경우는 제외한다)		별표 15
사.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제48조제1		별표 15 제1호부터 제4호까지·제5

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 시설	호[저장설비에서 건축물 외벽(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)까지 설치된 배관에 적용되는 기준만을 말함]·제6호·제10호부터 제13호까지·제15호부터 제17호까지·제19호·제20호
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※ 완성검사항목 중 안전성 확인 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.

3. 정기검사

검사대상시설		검사항목
가.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	1) 용기 충전시설 (소형용기 충전시설과 가스난방기 용기 충전시설을 포함한다)	별표 3 제1호가목1)부터 3)까지·4)가)부터 4)다)까지·4)라)①㉔·4)라)①㉕·4)라)①㉖·4)마)부터 4)타)까지·5)·6)나)·6)다)·7)(기밀시험만을 말함)·8)가)부터 8)다)까지·9)·10)나)①(기밀시험만을 말함)·10)다)①부터 10)다)③까지·10)다)⑤부터 10)다)⑧까지·10)라)(비파괴시험을 제외함)·11)·12)가)·12)나)·13)·14)·16)가)부터 16)사)까지·제2호 나목1)·2)·4)·5)·라목1)·마목2)·사목·아목·자목·차목
	2) 자동차용기 충전시설	별표 3 제1호가목2)·3)·4)가)·4)다)·4)라)①㉔·4)라)①㉕·4)라)①㉖·4)마)부터 4)타)까지·5)·6)나)·6)다)·7)(기밀시험만을 말함)·8)가)부터 8)다)까지·9)·10)나)①(기밀시험만을 말함)·10)다)①부터 10)다)③까지·10)다)⑤부터 10)다)⑧까지·10)라)(비파괴시험은 제외함)·11)가)·12)가)·12)나)·14)사)·16)가)부터 16)사)까지·나목1)부터 7)까지·제2호 나목1)·2)·4)·5)·라목1)·13)·사목·아목·차목
	3)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	별표 3 제1호가목1)부터 3)까지·4)가)·4)다)·4)라)①㉔·4)라)①㉕·4)라)①㉖·4)마)부터 4)타)까지·5)·6)나)·6)다)·7)(기밀시험만을 말함)·8)가)부터 8)다)까지·9)·10)나)①(기밀시험만을 말함)·10)다)①부터 10)다)③까지·10)다)⑤부터 10)다)⑧까지·10)라)

		(비파괴시험은 제외함)·11)가)·12)가)·12)나)·16)가)부터 16)사)까지·제2호 나목1)·2)·4)·라목1)·13)·사목·아목·차목·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3호(사업장 밖으로 연장된 배관만을 말함)
나.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		별표 3 제1호가목2)·3)·4)가)·4)다)·4)라)①㉔·4)라)①㉕·4)라)①㉖·4)마)부터 4)카)까지·5)·6)나)·6)다)·7)(기밀시험만을 말함)·8)가)①·8)나)·8)다)·10)나)①(기밀시험만을 말함)·10)다)⑤·10)다)⑥·12)가)·12)(나)·16)가)·16)다)·16)라)·16)마)·제2호나목1)·2)·4)·사목·아목, 별표 5 제1호 가목·나목·다목1)나)·1)다)·2)가)·2)나)·2)마)·2)사)·2)자)·3)부터 6)(비파괴시험은 제외함)까지·라목부터 자목까지
다.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영업소 용기저장소		별표 6 제1호 및 제2호가목·나목, 별표 9 (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)
라.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		별표 8 제1호가목1)·2), 별표 3 제1호가목2)·3)·4)가)·4)다)·4)라)①㉔·4)라)①㉕·4)라)①㉖·4)마)·4)바)·4)사)부터 4)카)까지·5)·6)나)·6)다)·7)(기밀시험만을 말함)·8)가)①·8)(나)·8)다)·10)나)①(기밀시험만을 말함)·10)다)①부터 10)다)③까지·10)다)⑤·10)다)⑧·10)라)(비파괴시험은 제외함)·12)가)·12)나)·16)가)·16)다)·16)라)·16)마)·제2호나목1)·2)·4)·사목·아목, 별표 5 제1호 가목·자목, 별표 8 제2호가목1)·2)
마.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(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하고, 바목의 경우를 제외한다)		별표 15 제1호부터 제9호까지·제11호부터 제15호까지·제18호, 별표 5 제1호다목2)가)·2)나)·3)·4)·6)(비파괴시험은 제외함)
바.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제48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시설		별표 15 제1호부터 제4호까지·제5호(저장설비에서 건축물 외벽까지 설치된 배관에 적용되는 기준만을 말함)·제6호·제11호부터 제13호까지·제15호·제20호

4. 수시검사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장치의 유지·관리상태에 관한 사항

- 1) 안전밸브
- 2) 긴급차단장치
- 3)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
- 4)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
- 5) 강제통풍시설
- 6) 정전기제거장치와 방폭전기기기
- 7)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
- 8)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
- 9)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